



## 목 차

# 농기계종합보험 『콤바인』 매뉴얼

2019. 10.

NH농협손해보험  
정책보험지급팀

I. 공통	3
1) 기대번호 및 년식 확인	3
2) 현장 조사방법과 관한 사항	4
3) 사진촬영 방법	5
II. 손해평가	16
1) 부품	16
2) 공임	16
3) 견인비 · 구난비	18
4) 잔존물 처리 방법	23
5) 주요 부위별 손해평가 방법	23
III. 구비서류	27
IV. 국내 제조사 A/S팀 연락처	28
첨부1. 보험모집경위서 (기대번호 상이한 경우)	
2. 문답확인서 (피보험자)	
3. 기술소견서	

# I. 공통

## 1. 기대번호 및 년식 확인

### 1. 기대번호 확인

- 계약사항의 기대번호와 파손된 목적물의 기대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 계약상 기대번호와 실제 목적물 기대번호가 상이한 경우에는 “첨부1” 모집경위서를 농·축협 보험담당자에게 징구한다.  
【계약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일기종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 기계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한다】
- 농협본사 농기계 심사자는 잘못 기재되어 있는 기대번호를 기간계 시스템 [3102] 변경설계처리화면의 일반변경에서 정정 또는 수정한다.

### 2. 년식 확인

- 실제 목적물 년식과 계약상 년식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재 확인하도록 한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 기대번호(차대번호)로 제조사에 연락해서 확인
- 매매계약서
- 대출(융자) 받은 경우 관련서류
- 중고농기계 사이트 ([www.agriis.co.kr](http://www.agriis.co.kr))의 모델별 찾기에서

년식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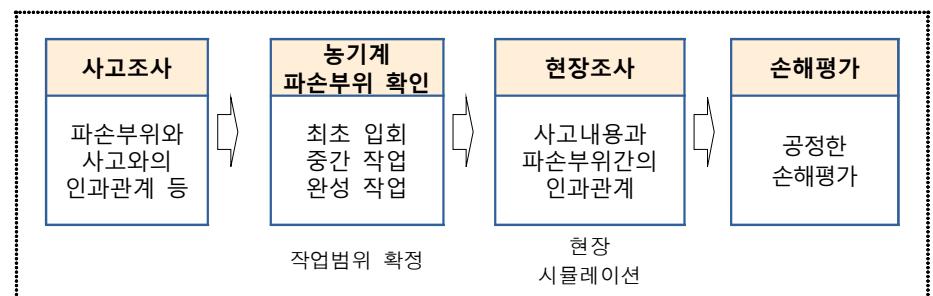
- 만일 위 4가지로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면세유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년식으로 준용

### □ 년식 기산점

- 신품인 경우에는 제조년월일로 기준으로 하며, 그 외에는 제조사가 대리점으로부터 출고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년식 때문에 분쟁이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출하증명서”를 첨부하고 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 2. 현장 조사방법과 관한 사항

### 1. 조사절차 흐름도



### 2. 사고조사

#### □ 면·부책 사고조사 철저 실시

- 계약 후 1개월 내 사고는 가입 전 사고조사 철저 실시
  - 구입경로, 가입경로 등 주변조사

- 실제 농기계 인지 여부 조사
-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부품 정품 교환 여부 확인
- 통신선과의 충돌 사고 (구상처 확보 등)

⇒ **면·부책 조사 사항은 기본이므로 건별 조사 포인트에 맞춘 조사결과를 종결보고서에 작성 제출한다.**

- 모든 사고건의 피보험자 문답확인서는 표준화된 양식 사용
  - 표준화된 문답확인서 : “첨부2 문답확인서”를 받아 보고서 제출시 첨부한다.
  - 문답확인서에 없는 사항은 추가적으로 기재

### 3. 사진촬영 방법

#### 원칙

- 사고 농기계는 **최초 입회**하에 사진촬영을 한다.  
만일 부득이 최초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서에 기재한다.
- 사고 농기계의 전경과 같은 사진은 찍지 않는다.
-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보고서에 사진 편철을 한다.
  - ① 사고현장 사진 (파손부위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시행하여 사진상에 표기를 한다)
  - ② 기대번호 일치 여부 확인 : 사진 첨부
  - ③ 피해농기계 전면, 후면, 측면 전경 사진
  - ④ 외판 파손 및 변형된 사진 들
  - ⑤ 수리과정 사진
    - 파손된 부품사진은 단품으로 찍는다.
    - 부품부착 사진 또는 후레임 판금 작업 사진 등
  - ⑥ 완성 후 사진
- 최초 입회 사진 외 수리과정 등은 농기계수리센터(대리점)에서 찍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 사진 촬영 예시 】

##### 1. 사고현장 사진 (시뮬레이션 실시한 사진)



## 2. 사고당시 현장사진 [있을 경우]



풀숲에 가려 보이지 않은  
돌 도출 모습



충돌흔적과 떨어진 예취날  
모습  
<파손부위와의 정확한  
인과관계 확인>



충돌흔적과 떨어진 예취날  
모습



### 3. 구난과정 현장사진 (있을 경우)



### 4. 파손 농기계 사진 (편철 순서)



<파손부품 탈착 수리과정 사진>



<파손된 부품 단품 사진>



뒤 연결 파이프(하) 변형



탈곡실프레임 오픈 총조합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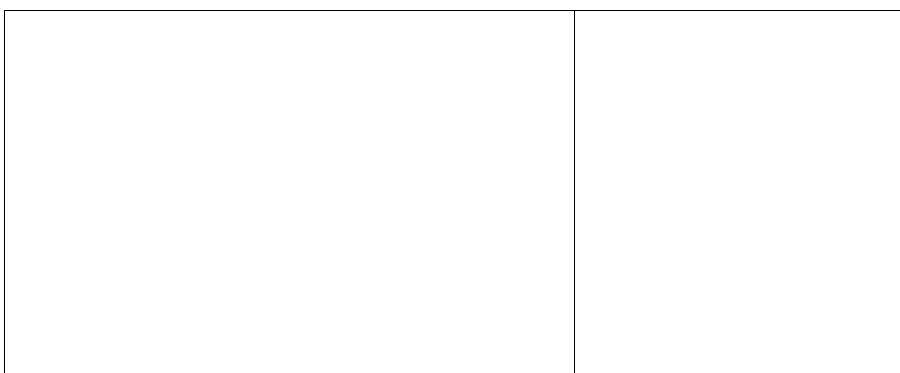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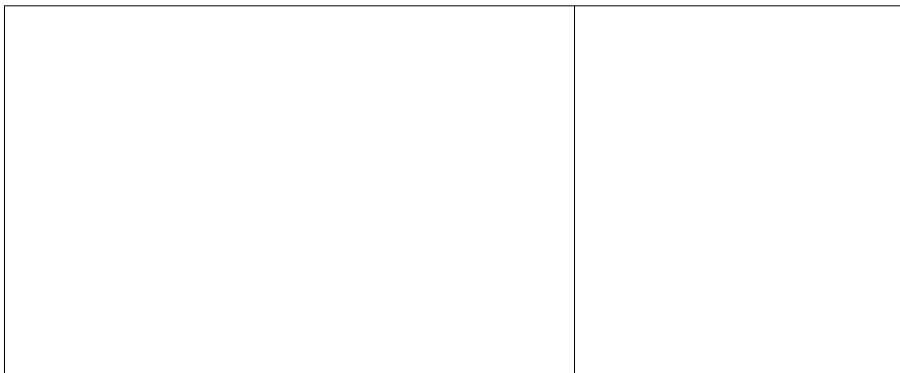
뒤 연결파이프(상) 변형

<수리과정 사진>



예취프레임 변형교환  
작업 사진

<수리완료 사진>



- 파손된 기계를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했으면 작업범위를 수리센터와 협의하여 작업범위를 확정한다.
  - 편승 수리하지 않도록 한다.
  - Assy's 및 일부 교환 여부 등 확정 후 수리하도록 한다.
- 현장사진을 계약자 또는 견인기사에게 받을 때에는 메일로 받거나 계약자가 찍은 사진을 그대로 찍는다.  
(날짜, 시간 반드시 있어야 함)
- 다음 아래의 경우에는 기술소견서를 받아 보고서와 함께 첨부
  - 기계적 사고로 기술적 소견이 필요한 경우
  - 파손부위와 사고원인이 상이하여 기술적 소견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담당자 판단하에 기술소견서가 필요한 경우
  - 기술소견서 양식 : “첨부3” 참조
- 주요 부품 (엔진, 밀션 등)에 대해서는 파손원인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원인」을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 II. 손해평가

### 1. 부품

- 부품가격은 소비자 가격으로 인정한다.
  - 부품가격이 과다 청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환하는 전 부품에 대해 가격조사를 실시한다.
- 신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품거래명세표를 수리업체로부터 청구한다.
- 부품별 부품번호가 있는 파트리스트를 수리업체로부터 받거나 부품거래명세표에 파트리스트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부품 거래명세표로 대체가 가능
- 필요한 경우 단가 입증서류(전산 자료)를 수리업체로부터 청구

### 2. 공임

- 공임은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제출필증서상의 대중소\*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각 등급별 M/H당 공임을 인정한다.

(단위 : M/H)

30,000원	35,000원	40,000원
<input type="radio"/> 사후관리업소 제출 필증서 : <u>소(小)</u> <input type="radio"/> 사후관리업소 제출 필증서가 없거나 입증하지 못한 경우	<input type="radio"/> 사후관리업소 제출 필증서 : <u>중(中)</u>	<input type="radio"/> 사후관리업소 제출 필증서 : <u>대(大)</u> <input type="radio"/>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업체

\* 직원수, 규모, 설비능력에 따라 대중소로 나눠져 있음

## (사후관리업소 제출필증서 샘플) \_ 지자체별 양식이 다소 차이가 있음

제 2010 - 1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

1. 사후관리업소의 명칭 :
2. 성 명 :
3.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5. 사후관리업소의 등급 : 대형

위 업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0년 4월 1일 증명

평택시장

제 5 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

1. 사후관리업소의 명칭 :
2. 성 명 :
3. 소재지 : 산청군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5. 사후관리업소의 등급 : 중형

위 업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 06월 26일

산 청 군

제 2017 - 2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제출 필증

1. 사후관리업소 명칭	
2. 성 명	
3. 소재지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후관리업소의 등급	소형

위 업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7년 4월 3일

서귀포시장

## 3. 견인비 · 구난비 인정기준

### 1. 인정기준

- 피보험농기계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사고장소에서 인근 정비업체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된 직접손해를 말함
- **면도 최초 1회 인정 (기본 20km까지로 함)**  
단, 최초 입고한 수리업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하여 다른 수리업체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견서에 의해 2회까지 인정이 가능함
- 전문견인 및 구난업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경우에는 제외
- 자력이동이 가능하고, 단순 부품교환만 요하는 경우에는 제외
- 인양 및 운반 중 운반업자가 주의 및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늘어난 손해는 제외

### 2. 견인비 · 구난비 인정기준

#### 가. 적용기준

- ① 운임·요금은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을 구난 또는 견인 운송할 때의 운임 및 요금수수에 관하여 적용하되 이 운임 및 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 ② 운임·요금에는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견인차로 구난가능한 경우의 운임·요금이며 구난장비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구난장비 사용료를 별도로 계산한다.(예: 크레인 사용시 고시된 크레인 사용료 적용등)

- ③ 운임 및 요금을 계산할 때에 발생하는 단수는 100원 단위로 하며, 10원단위에서 4사5입에 의하여 절상 절하한다.
- ④ 운임은 실차거리(편도)에 의하여 경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최단거리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 회주가 경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한 경로의 거리에 의한다.
- ⑤ 다음의 특수한 작업조건 하에서는 기본운임·요금의 30%를 가산한다.
- ⓐ 시간당 50mm 이상의 심한 폭우 또는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 ⓑ 야간 (20:00 ~ 익일 06:00), 휴일 또는 법정공휴일
  - ⓒ 10톤이상 대형차량, 냉동차, 냉장차
  - ⓓ 배기량 3,000cc이상 승용차
  - ⓔ 다만,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50% 할증 적용
- ⑥ 다음 비용은 실비로 받는다.
- ⓐ 자동차 도선료(도선에 따르는 제경비 포함)
  - ⓑ 유료도로 통행료
  - ⓒ 차주의 요구에 의한 첨가 물품 비용
- ⑦ 계산순서
- ⓐ 차량을 견인하는 운송거리에 의한 운임의 계산
  - ⓑ 운임의 단수처리
  - ⓒ 제요금 및 실비의 계산(할증료, 구난료등)
- ⑧ 기타
- ⓐ 특수한 상황의 변동에 의하여 운행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와 도심밀집지 역등 교통체증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는 당사자 협의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할증요금을 가산할 수 있다.
  - ⓑ 항별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이상의 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 ⓒ 운임 및 요금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적용방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관습에 따른다.

#### 나. 톤급별·거리대별 견인 운임표 (국토해양부 고시기준)

(단위 : 원, VAT 포함)

거리대별 \ 톤급별	2.5톤 미만	2.5톤 이상 ~ 6.5톤 미만	6.5톤 이상
10 Km 까지	51,600	64,700	102,500
15 Km 까지	60,000	75,500	118,700
20 Km 까지	68,300	86,300	134,800
25 Km 까지	76,700	97,100	151,100
30 Km 까지	85,100	107,900	167,200
35 Km 까지	93,500	118,700	183,400
40 Km 까지	101,900	129,500	199,600
45 Km 까지	110,300	140,300	215,800
50 Km 까지	118,700	151,100	232,000
55 Km 까지	127,100	161,900	248,200
60 Km 까지	135,500	172,700	264,300
65 Km 까지	143,900	183,400	280,600
70 Km 까지	152,300	194,200	296,700
75 Km 까지	160,700	205,000	312,900
80 Km 까지	169,100	215,800	329,100
85 Km 까지	175,000	226,600	345,300
90 Km 까지	183,300	237,400	361,400
95 Km 까지	190,300	248,200	377,700
100 Km 까지	198,400	259,000	393,800
100 Km 초과시 매 10 Km마다 가산	16,800	21,600	32,400

\* 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중 1개 이상 징구

## 다. 카고크레인 임대표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차량톤수	1시간(기본)	0.5일 임대	일일임대	1개월임대
5톤	150,000	250,000	400,000	7,000,000
11톤	200,000	350,000	500,000	8,500,000
15톤	250,000	400,000	600,000	9,500,000

※ < 주의 >

- 1) 일일 가동시간은 8시간(08:00~17:00까지, 대기시간 포함)기준으로, 추가 임대시에는 시간당 50%를 추가 계산하고 22:00 이후에는 철야작업으로 100% 추가로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55조 적용)
- 2) 일임대료는 유류대가 포함된 가격이며, 월 임대료는 20일(150톤 이상은 18일) 작업기준으로 산정하며 임차인은 유류비, 운반비, 숙박비 등을 부담한다.
- 3) 장비 임대차시 주기장으로부터 40km 이내 작업은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그 이상 주행시는 별도 주행료를 상호협의하여 별도의 운임을 추가한다.

## 라. 굴삭기 임대료

(단위 : 원, 부가세별도)

품명	규격	가격	품명	규격	가격
자주식	03W 0.3m <sup>3</sup> 버킷	510,000	비자주식	03LC 0.3m <sup>3</sup> 버킷	510,000
	06W 0.6m <sup>3</sup> "	630,000		06LC 0.6m <sup>3</sup> "	370,000
	08W 0.8m <sup>3</sup> "	760,000		08LC 0.8m <sup>3</sup> "	390,000

※ < 주의 >

- 1)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2) 1일 임대료는 유류대가 포함된 가격이고, 월임대료는 유류비 및 운반비, 숙박비 기타 일체가 별도임.
- 3) 연장작업 및 야간작업비는 기준(주간)작업비의 150% 할증됨.
- 4) 비자주식 0.3m<sup>3</sup> 버킷, 브레이커는 운반비, 유류비 포함

## 마. 기타 추가비용

### ① 대기료

차주로부터 사고차량의 견인요청이 있을때에는 기준 대기시간을 30분으로 하고 기준대기시간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 30분마다 대기료를 청구할수 있다. 이 경우 대기시간은 견인차량 현장 도착 후 구난작업시작전까지의 시간을 계산한다.

(단위 : 원)

톤급별	2.5톤 미만	2.5톤이상 - 6.5톤미만	6.5톤이상
대기료	8,200	9,200	12,800

### ② 구난작업료(시간당)

견인차량의 구난요금계산에 있어서의 구난시간의 계산은 사고 및 고장차량에 대한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연결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하며 이를 근거로 구난작업료를 청구할수 있다.

(단위 : 원)

톤급별	2.5톤 미만	2.5톤이상 - 6.5톤미만	6.5톤이상
구난작업료	31,100	38,200	61,000

### ③ 보관료

지역별 조례규정에 따르되, 관공서의 1일 주차료 기준 요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보관료 총금액이 300,000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지역별 조례규정 참조

## 4. 잔존물 처리 방법

- 부분품에 대해 재사용이 가능하고 낙찰가능성이 있는 것은  
온라인 입찰
- 낙찰 가능성이 없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재사용이 불가  
능하도록 락카를 칠한다.
  - 수리업체에서 중고품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 락카칠한 사진 >



- 디바이더가 거의 휘어져 있으나 이는 정상이다.
  - 예취부 전체가 볼트로 체결되어 있어 차시 현상일 수 있으니 철저 확인 필요
- 총 조합 교환할 때에는 전부 O/H하여 변형 여부 등을 확인
  - 예취부 상판은 주물다이캐스팅으로 충격에 의해 모형 변화가 없다. 즉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깨진다.  
따라서 깨진 경우에는 교환 불가피함
  - 아래 사진의 파란네모 부분이 상판이고 빨간네모가 하판임  
→ 상판은 주물로 변형이 발생되지 않고 하판은 철판으로 교환 대상임

< 예취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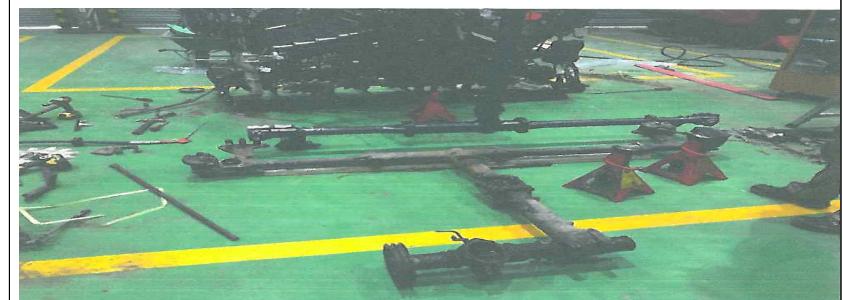


## 5. 주요 부위별 손해평가 방법

### 1. 예취부

- 예취부의 경우 대부분 총조합 교환율이 95%에 달하고, 상부  
부분이 휘어지지 않는 이상 교환할 필요 없고 수리가 가능
- (원칙) 현장상황을 재현함으로서 파손부위 가능성을 대조 변형  
부분 철저 확인

< 상판사진 >



## □ 예취부 손해사정 지침 내용

- 예취부 신품교체 및 신품 수리 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품비용(공임 제외)에 대해서 감가를 적용한다.  
다만, 부품비용은 사고당시 농기계 손해 보험가입금액의 **25%를 최대한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 예취부 구동축 조합은 예취부로 포함하지 않음
- 예취부 날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음

## 2. 콤바인 “궤도”

- 궤도 안쪽 사이드에 생산년도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촬영
- 사고 콤바인 당시의 궤도 인정
  - (예) 사고당시 정품이 아닌 B품인 경우
- 사고 현장상황과 대조하여 파손 진위여부 확인
- 궤도가 찢어진 것 중 녹슨 것은 재 확인 필요
- 궤도가 균열이 가고 녹슬고 철심이 빠진 것은 노후화에 의한 것인지 여부 확인
- 교환 기산점 확인하기 위한 입증자료 수취  
(감가는 월감가로 한다)
- ※ 수로 등에 빠져서 나오기 위해 과부하에 의한 파손은 부책  
→ 직접적인 손해로 판단함

## 3. 엔진 및 밸브

- 엔진 및 밸브 파손은 전체 사진만 찍지 말고 O/H 하여 실제 부위별 부품이 파손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진촬영한다.
- 콤바인 밸브은 벨트타입이기 때문에 슬립(마찰)에 의해 화재사고가 잦음
- 엔진 및 밸브의 경우 사고현장에서의 충격 물체와의 인과관계 철저 확인하여 보고서에 상세 기재  
→ 기계적 사고 여부 판단할 것
  - 밸브의 경우 밸브 케이스가 파손되지 않고 교환 청구하는 건에 대해서는 사고 인과관계 필수 확인

## 4. 농기계 내용년수

- 농어업기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4제1항 제1호 관련 2014. 3.6 개정에 의해 농업기계의 내용년수는 “첨부4”의 자료와 같이 적용한다.

### III.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 청구서</li> <li>○ 보험사고 접수처리 안내</li> <li>○ 보험금 심사 지연 안내</li> <li>○ 보험금 지급 안내</li> <li>○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등</li> <li>○ 각종 확인서 및 합의서 (해당 시)</li> <li>○ 무통장입금내역 (선 지급시)</li> <li>○ 기타 입증서류 등</li> </ul>
농기계 사설 서류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출하증명서 (발급처 : 대리점)</li> <li>○ 면세유관리대장 (발급처 : 농협경제사업부)</li> <li>○ 임대차 계약서</li> <li>○ 융자금 대출내역</li> <li>○ 기타 증빙서류</li> <li>○ 목적물 사진 (파손물, 기대번호)</li> </ul>
손해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적서, 부품거래명세서</li> <li>○ 부품리스트 등</li> <li>○ 견인, 구난 영수증</li> <li>○ 기술소견서</li> <li>○ 파손 사진 (최초, 작업, 완성 등)</li> </ul>
사실관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경위서 (피보험자, 피해자)</li> <li>○ 목격자 진술서</li> <li>○ 블랙박스, CCTV 영상</li> <li>○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화재증명원</li> <li>○ 사고현장 사진, 피해물 훈적 등 사진</li> </ul>

### IV. 국내 제조사 A/S팀 연락처

제조사	직위	성명	연락처
대동	팀장	정한경	053-610-3310
국제	고객지원팀	서봉기	043-730-1592
동양물산	CS 팀장	김성곤	063-830-1956
LS엠트론	부장	김종길	063-279-5810
(주)아세아텍	영업팀장	방승일	053-580-7791